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88
------------	------

제출년월일 : 2011. 5.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안 별표 1)
- 나.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다. 교육훈련 이수 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라.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급 내지 9급상당의”를 “1급부터 9급상당까지의”로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을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 “당연 퇴직한다”를 “당연 퇴직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1호 중 “제17조 내지 제24조의”를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로 한다.

제12조 중 “반영 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총무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총무과장 장 위 순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시정담당 손 덕 환
	담 당 자 성명 · 전화	방 숙 경 860-212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① (생략)	제4조(임용자격) ① (생략)	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급부터 9급상당까지의-----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 신 설 >	< 신 설 >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각호의 어느 하나에-----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2.~4. (생략)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신 설 〉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